

AICPA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안내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275조)에 의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며, AICPA 응시에 부족한 학점을 본원의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충족 가능합니다.

1.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취득을 하기 위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이며,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준비사항 -

1) **학습자 등록신청서 1부**(원내 비치)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국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증명서 불가)

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뒷면 참고)

② 대학(교) 졸업자 : **국문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대학(교) 재적생 : **국문 재학증명서(또는 국문 휴학증명서), 국문 성적증명서**

④ 대학(교) 중퇴자 : **국문 제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4) **수수료 1인당 4,000원**

2. 학점인정신청

수업종료 후 필요한 학점에 대해 인정신청 가능. 과목당 성적 60점(2005.10.27 기준 변경), 출석 80% 이상시 학점취득이 가능. (**취득학점은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인정됨**)

- 학습자 준비사항 -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목 학점신청 및 이수

1) **학점인정신청서 1부**(원내 비치)

2)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과목당 3,000원)**

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국교육개발원 방문 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 ~ 1.20	4.1 ~ 4.20	7.1 ~ 7.20	10.1 ~ 10.20
본원 접수	12.15 ~ 12.31	3.15 ~ 3.31	6.15 ~ 6.30	9.15 ~ 9.30

※ 본원 접수기간 이외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및 각 시·도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월~금(9:00~11:40, 13:00~17:30, 주중에만 신청 가능)

외국교육기관 학습자등록신청 기준(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허용대상 : 외국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지 있지 않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학력의 학습자등록만을 허용과 타전공 학위에만 국한)

구비서류

내·외국인 공통서류

① 초, 중, 고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예: 국내에서 고등학교 2년 1학기 중 자퇴 후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국내 당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제적(자퇴) 증명서 1통과 외국고등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2학년 2학기~3학년 2학기까지 증명))

※ 원어일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

② 대학(교)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타전공학사학위 취득 목적

※ 원어일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

※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학점평가자료, 서술형 확인서 등을 첨부)

③ 초, 중, 고, 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한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교육원 발행

※ 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는 미국 영사관의 사실증명서 요구(자세한 사항 문의)

※ 원어일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타전공 학사학위과정으로 등록하게 되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대학(교)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공통서류

④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

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

⑥ 외국정부발행 국적증명서류(외국인호적증명 or 시민권/여권사본)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의 경우 학습자와 부모의 국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학습자가 한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외국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외국교육기관 학력자는 반드시 본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외국 학력에 대한 구비 서류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